

공 고

문화재수리기능자 행정처분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3. 19.

문 화 재 청



<행정처분 내용>

성명	자격종목 (자격번호)	처분의 내용	처분의 사유 및 근거
서정은	보존과학공 (보존처리공) 제4035호	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 위반 -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.3.1.부터 2018.3월경까지 (주)금강문화재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함 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4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
김권영	표구공 제822호	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 위반 -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.9.1.부터 2015.7.31.까지 한영문화재에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2015.3월경까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함 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4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
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